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7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 : 김예지 · 구자근 · 추경호

박덕흠 · 최승재 · 이명수

이종성・김 웅・양금희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의 재산세 감면 특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 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연간 임대료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 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현하액이 연간 임대료 총액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 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 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 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